

행복한 일상에서  
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도시

# ANSAN



## - 반월시화산업단지 환경기술인 - 2021년 환경오염물질 관리 정책



# Contents

- I 안산시 산단환경 현황
- II 민원 추이도
- III 그 간 산단환경 정책 성과
- IV `21 산단환경 정책 방향
- V 환경관련법 주요사항
- VI 환경관리 실무요령



# 1

## 안산시 산단환경 현황





### POINT 1.

**인 구** 704,454명(외국인 포함)

### POINT 3.

#### 기 업 체

기업체 10,831개소

종업원 151,469명

### POINT 2.

#### 면 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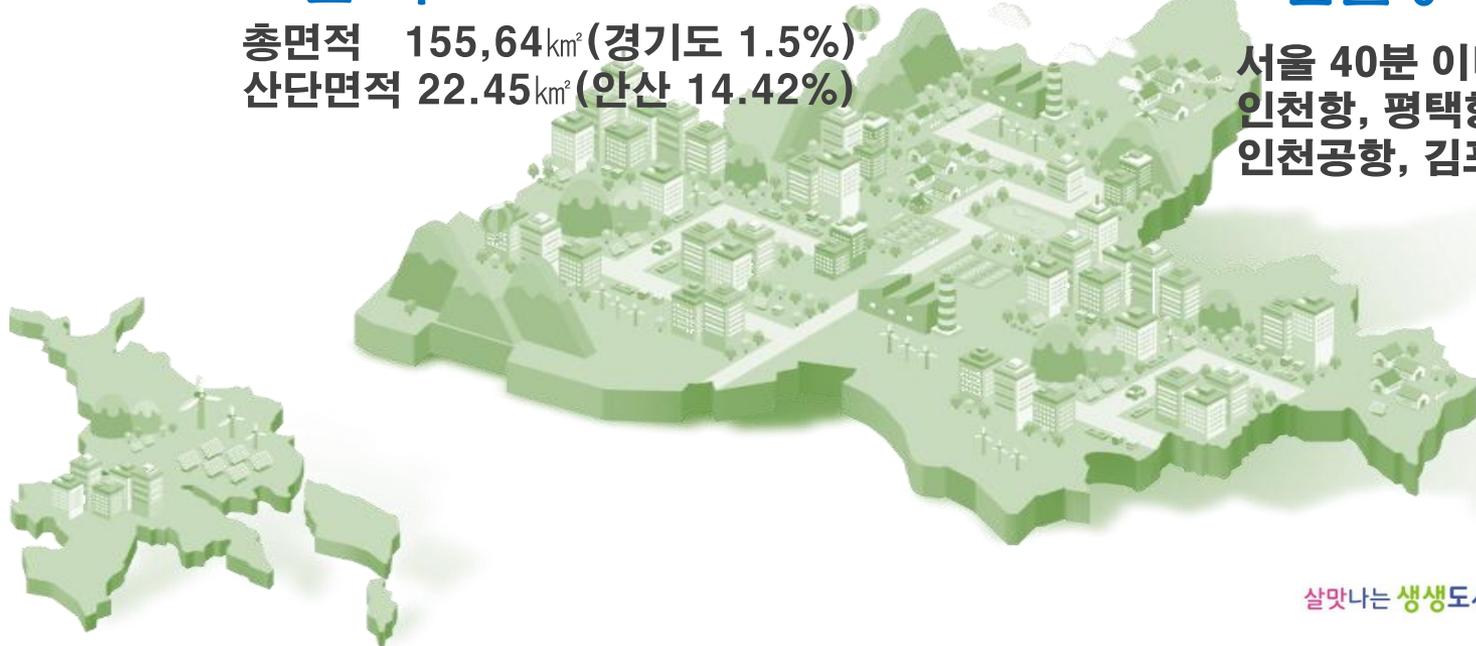
총면적 155,64km<sup>2</sup>(경기도 1.5%)

산단면적 22.45km<sup>2</sup>(안산 14.42%)

### POINT 4.

#### 접근성

서울 40분 이내  
인천항, 평택항 30분  
인천공항, 김포공항 40분



한눈에  
보는  
생생도시  
안산



# 대기.폐수.악취.폐기물 등 \_2021 환경배출시설

## 환경배출사업장

- 환경분야 사업장 현황  
- 총 3,197개 인허가사업장 (기준:2021.1.1.)

구분	사업장 (개소)	인허가분야(건)				
		소계	수질	대기	악취	기타
총계	1,781	3,197	848	841	1,460	48
반월	1,398	2,813	848	841	1,077	47
시화	314	315	-	-	314	1
팔곡 도금	69	69	-	-	69	-

## 폐기물사업장

- 폐기물 관련 사업장  
- 총 2,768개 인허가사업장 (기준:2021.1.1.)

사업장 (개소)	인허가분야						
	처분 업	재활 용업	수집 운반	배출 자	처리 신고	SRF 사용	처리 시설
1,067	5	17	6	999	2	1	37
기타 소계 (개소)	특정토양, 비산먼지, 관리대상기기						
	특정토양 오염관리		비산먼지		관리대상기기		
1,701	126		63		1,512		

※ 2017년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(환경부, '17.12.)

# 대기·폐수·악취·폐기물 등 \_2021 환경배출시설

**환경관리**  
교육, 협의,  
인허가

**환경지도**  
지도점검  
시료채취

**환경측정**  
측정소운영  
전수조사

**폐기물**  
처리업, 배출업  
비산먼지

**기술지원**  
보조금,  
백연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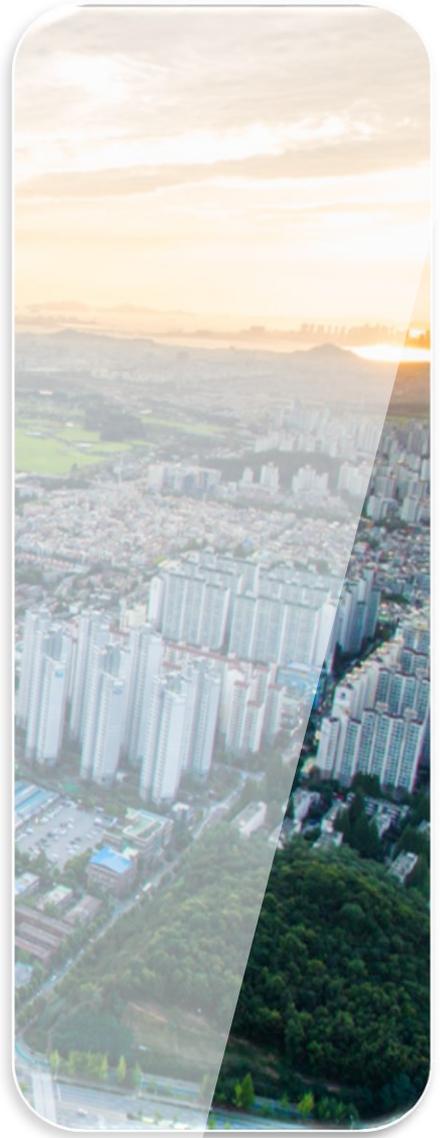
- \* 환경배출시설 인허가  
대기·폐수·악취  
(대기·폐수 : 반월 4, 5종)
- ★ 경기도 관할(대기·폐수)  
1, 2, 3종, 시화 4, 5종
- \* 입주 전 환경성 검토
- \* 환경기술인 교육
- \* 환경 간담회
- \* 환경관련 협의 의견  
(제도개선, 법 개정 등)

- \* 환경배출시설 지도점검  
우수, 일반, 중점 등급
- ★ 악취 등급관리제 도입
- \*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
- \* 환경감시단 운영
- \* 환경상황실 운영
- \* 산단 환경관련 민원 대응

- \* 환경컨트롤센터 운영  
U-Clean통합시스템  
악취측정시스템 운영
- 악취모니터링 DB 화
- 악취유발물질 분석
- 악취발생지역 예측
- \* 악취실태조사(2회/연)
- \* U-Clean시스템 고도화

- \* 폐기물, 비산먼지, 토양  
인허가 및 지도점검  
우수, 일반, 중점 등급
- \* 자원순환협의회 지원
- 재활용율 관리

- \* 소규모사업장 노후된  
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
- \* 염색단지 백연저감사업
- \* 청정공정 확산사업
- \* 시화지속위 협의



# 민원 추이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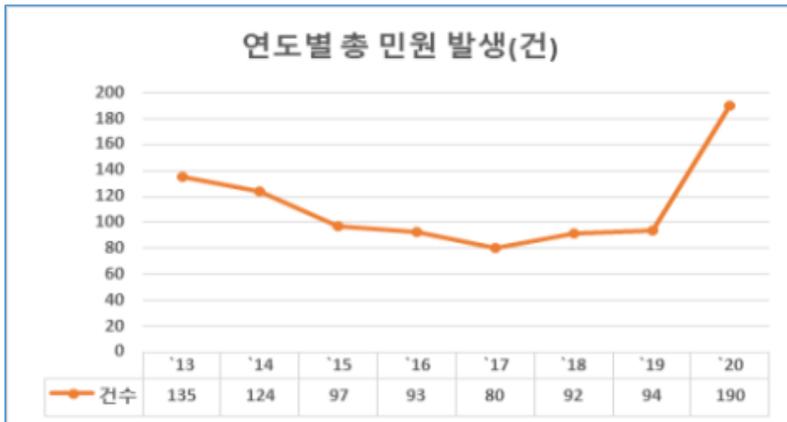
최근 민원 발생 추이

# 악취 모델링



# 민원 발생 현황

## GRAPH



### 민원 추이 (13~현재) 7년간

- 악취민원 점차 감소되다가 2020년 초지동 아파트 입주 후 증가됨
- 민원 발생 지역 비중은
  - 초지동(32%), 성곡동(20%) 신길동(12%)

## 풍하 방향에 주거지 위치

오염물질에 이동에 따른 환경 민원 발생

최근 재건축 아파트 민원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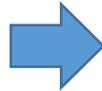
3

그간 산단환경 정책성과

2015~2020년 환경오염물질 저감

# 산단환경 개선 성과

“반월시화산단의 환경이 확~개선되었습니다.”



악취 등 환경 개선 시민 만족도

81% 달성(2020년)

# 2015~2020년 환경오염물질 저감 산단환경 개선 성과

## 미세먼지(PM10) 감소

60  $\mu\text{g}/\text{m}^3$   
(2015) >> 47  $\mu\text{g}/\text{m}^3$   
(2020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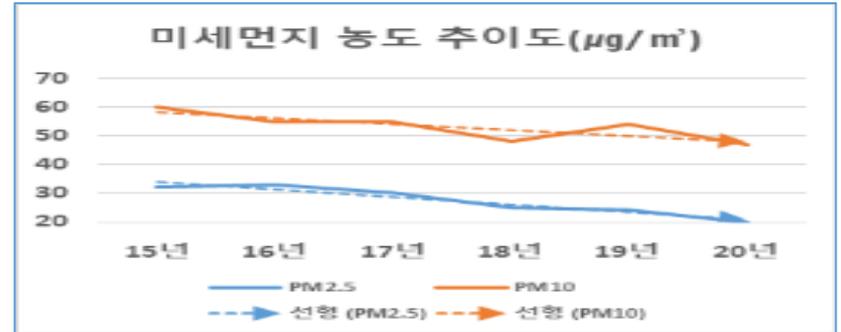
21.7%  
감소

## 초미세먼지(PM2.5) 감소

32  $\mu\text{g}/\text{m}^3$   
(2015) >> 20  $\mu\text{g}/\text{m}^3$   
(2020)



37.5%  
감소



## 주요 악취 물질(H2S) 농도 감소

0.081 ppb  
(2015) >> 0.013 ppb  
(202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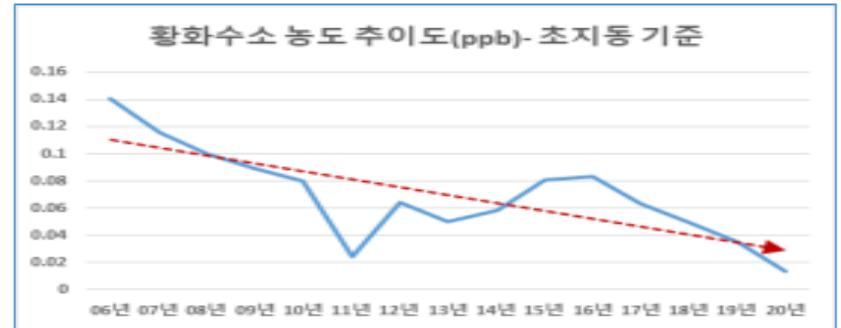


초지 84%  
감소

0.318 ppb  
(2015) >> 0.014 ppb  
(2020)



원곡 95.6%  
감소



## 산업폐기물 발생량 감소

2,079.7톤/일  
(2015) >> 1,879.1톤/일  
(2019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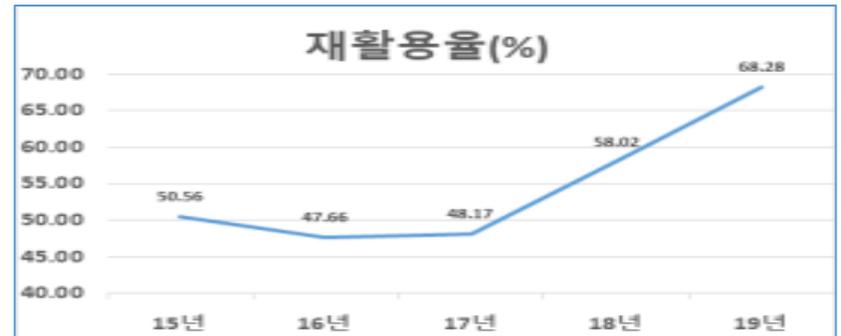
9.6%  
발생 감소

## 산업폐기물 재활용량 증가

1,051.4톤/일  
(2015) >> 1,283.0톤/일  
(2019)



22%  
재활용 증가



# 산단환경 개선 노력

## POINT 1.

### “ 산단 환경 예산 확대 ”

- ◆ 14억원(2015년) → 109억원
- ★ 95억원(700%) 증가

## POINT 3.

### “ 대기 및 악취 방지시설 지원 확대 ”

- ◆ 소규모사업장  
7개소 3억원(2015년) → 83개소 76.4억원(2020년)
- ★ 예산지원 비율 확대  
☞ 지원을 50%(2015년) → 90%(2020년)
- ◆ 염색단지 백연저감  
17개소, 50억원 추진( 2019~2020년)



## POINT 2.

### “ 과학적 모니터링 관리 구축 ”

- ◆ U-Clean 통합시스템 고도화  
(2020.3.~2021.6.)
- ◆ 무인 악취포집기 설치(21개소)

## POINT 4.

### “ 민·관 협력 강화 ”

- ◆ 민간 환경감시원 상시 운영(8명, 주야2교대)
- ◆ 환경기술인 교육 및 간담회(수시, 600여명)
- ◆ 자원순환협의회 운영(105개사)

# 4

## '21 산단환경 정책방향

# 2021년 안산시 산단환경 환경정책 방향

## POINT 1.

“ 과학적 환경오염 측정시스템 구축 ”  
환경컨트롤센터(통합상황실) 운영  
격자방식 센서 구축 모니터링 및 모델링  
스마트 대기환경 관제시스템 고도화 구축

## POINT 2.

“ 노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”  
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교체 지원  
염색단지 백연저감 사업 추진  
청정공정 확산사업 추진

## POINT 3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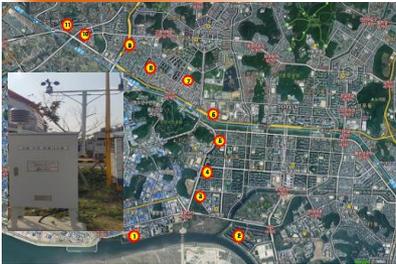
“ 등급관리제 도입 및 중점점검 ”  
악취 관리 등급제 도입(A~D 등급) 점검  
민간환경감시단 모니터링  
(악취, 미세먼지)



# 2021년 산단환경 정책\_POINT1.

# 과학적 환경 구축

무인 악취포집시스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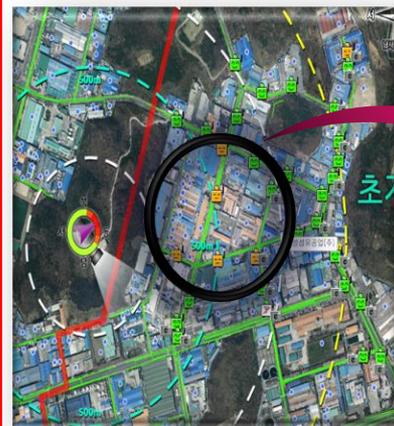
악취측정망



악취센서



환경컨트롤센터  
(U-clean 시스템)



악취모니터링



# 과학적 환경 구축

## “스마트 대기환경 관제 시스템 고도화”

민원 증가 발생 반영\_주거환경 변화(고층화)에 따른 고도별 확산 모델링

- ▶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(미세먼지, 악취) 센서  
약 30개소 격자방식 설치
- ▶ 도시환경변화(산업단지 인근 고층아파트 건립)를 반영한  
고도별 대기 확산 모델링 시스템 개발
- ▶ 악취측정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측정기기 교체 및 보강  
(GC 4대, IC 4대, LC2대) 등
- ▶ 사업비 : 9억원  
(시화지속위 대기개선  
로드맵 사업비 확보)



# 2021년 산단환경 정책\_POINT2. 환경시설 지원

## “ 노후 방지시설 교체 및 설치비 지원 ”

- 기 간 : 2021. 2. ~ 12.
- 대 상 :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(대기 1 ~ 5종 ※ 1 ~ 3종은 예산 여건에 따라)
- 사 업 비 : 7,524백만원 (2021년 예산) + 7,560백만원(2020년 잔액 명시이월 등 예산)
- 지원내용 :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비용(사물인터넷 설치비 포함) 90% 지원

★ 설비 용량별 보조금 지원 한도 - 여유율 제외한 설계 풍량 기준 (예시) 설계풍량 287<sup>m³</sup>/min → 290<sup>m³</sup>/min 공사비 지원



# 2021년 산단환경 정책\_POINT2. 환경시설 지원

## “ 염색단지 백연저감 설치 지원 ”

- 기 간 : 2018. ~ 2021. (연차적 실시)
- 대 상 : 염색단지 방지시설 - “OIL MIST” 제거 방지시설 교체(백연저감 검증시설 - 전기집진기, 복합오일필터)
- 사 업 비 : 158억원(시화지구 대기개선특별대책 로드맵 한국수자원공사 → 안산시 전입)
  - ※ 1차 : 2018. ~ 2020. 17개소 50억원 추진, 2차 : 17개소, 50억원(2021년), 3차 : 20개소, 58억원(2021년)
- 지원내용 : 백연 다량 사업장 검증시설 교체비용 90% 지원 ( ‘지방계약법령’ 에 따라 조달청 입찰 추진)



# 2021년 산단환경 정책\_POINT2. 환경시설 지원

## “ 청정공정 확산 사업(지역에코혁신사업) ”

- 기 간 : 2021. 3. ~ 12. (10차년도 사업) ※ 2012년부터 사업 추진
- 대 상 : 중소기업 25개사 (중소기업 청정 생산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감으로 친환경 체제 구축)
- 사 업 비 : 235백만원(산업통산자원부 135백만원, 시비 100백만원)
- 지원내용 : 청정생산 공정진단, 친환경 기업 정책지원 방안 마련, 기업맞춤형 청정생산 교육 등



# 2021년 산단환경 정책\_POINT3. 환경시설 점검

## “ 악취 등급 관리제 도입 및 중점점검 ”

아파트 재건축 등 고층 주거 변화에 따른 악취 민원 증가 문제 발생

지역 민원 및 환경 오염 적극 대응을 위한 ‘악취 등급제 관리제’ 도입 시행

구 분	A등급	B등급	C등급	D등급
평가기준 (최근 2년 이내)	악취강도: 약(1~2도) 행정처분: 없음 민원: 없음	악취강도: 중(3도) 행정처분: 없음 민원: 없음	악취강도: 중(3도) 행정처분: 1~2회 민원: 1회	악취강도: 강(4~5도) 행정처분: 3회 이상 민원: 2회 이상
점검 횟수	1회/1년(생략가능)	2회/년	3회/년	4회/년

※ 행정처분 : ‘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 ‘ (환경부 훈령) 의거 최근 2년간 행정처분

악취강도 : 직접관능법이 의거 0~5도 설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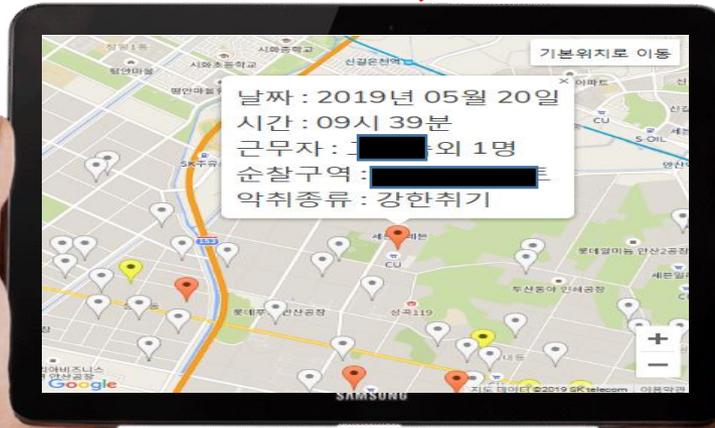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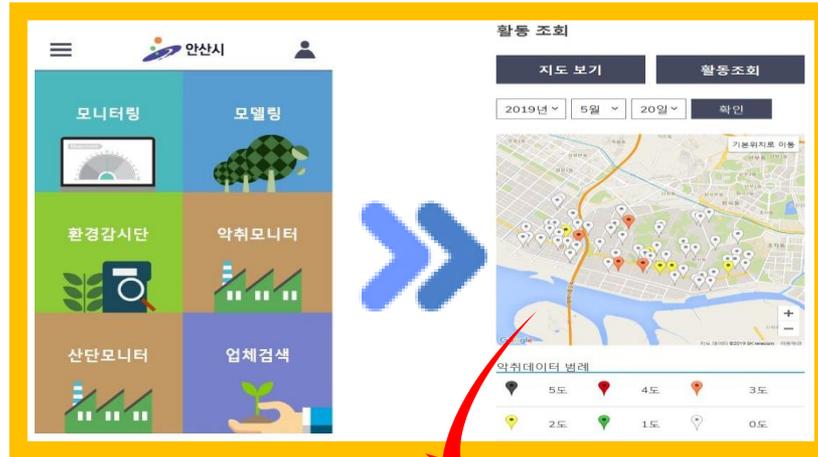
(0도: 무취, 1도: 감지취기, 2도: 보통취기, 3도: 강한취기, 4도: 극심한취기, 5도: 참기 어려운 취기)

★ 민간환경감시단 모니터링 & 지도점검에 의한 악취강도 설정

★ C, D 등급 기준 : 악취강도, 행정처분, 민원발생 조건 중 2개 이상 발생  
[ C와 D 등급은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선정 점검 강화 ]

# 2021년 산단환경 정책\_POINT3. 환경시설 점검

“ 연중 환경감시단 산단 순찰 모니터링 ”



“ 관리 등급제 ”  
선정 활용

# 5

## 환경관련법 주요사항



# COD에서 TOC로 (민간 2022년부터 본격 적용)

산업폐수 방류수 유기물질 관리 지표인 화학적산소요구량(COD) 총 유기탄소량(TOC)으로 전환, 폐수 중의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 관리

<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>

구분(mg/L)	2,000톤/일 이상 사업장				2,000톤/일 미만 사업장			
	청정	가	나	다	청정	가	나	다
현 CODmn 기준	40	70	90	40	50	90	130	40
TOC기준안	25	40	50	25	30	50	75	25

- 폐수 배출수의 CODMn 농도가 TOC의 1.8배로 측정됨에 따라  
TOC : CODMn = 1 : 1.8 로 적용하여 TOC 배출허용기준(안) 설정

<공공폐수시설 방류수 수질 적용기준>

구분(mg/L)	I 지역	II 지역	III 지역	IV 지역
현 CODmn 기준	20	20	40	40
TOC기준안	15	15	25	25

○ 방류수의 CODMn 농도가 TOC의 1.3배로 측정됨에 따라  
TOC : CODMn = 1 : 1.3 로 적용하여 TOC 방류수 수질기준(안) 설정

# 생태독성 업종 확대 (2021. 1. 1.부터)

# 주석 배출허용기준 설정 (2021. 1. 1.부터)

산업폐수 생태독성 기준 82개 전체 업종 배출시설로 확대  
수질오염물질 주석 배출허용기준 새로 설정

1.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종 등 35개 업종의 배출시설만 적용하던 생태독성 기준  
82개 전체 업종의 배출시설로 확대

▶ 시행규칙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(별표13)

2. 수질오염물질이면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석(Sn) 기준 새로 설정

▶ 시행규칙 주석 배출허용기준 설정 (별표13) : 청정지역 0.5mg/L, 가나특례 5mg/L

3. 사업장 발생 폐수 전량을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 총 대장균군 기준  
적용을 제외하여 사업장 전처리 부담 완화(2020. 1. 1.부터)

대기환경환경보전법

# 과징금 기준 변경 (2021. 6. 30.)

1. 과징금 상한액 : 매출액의 5% (매출액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 상한 2억원)  
(단, 위반행위 종류, 정도 등에 따라 1/2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 가능)
2. 과징금 처분 후 2년 이내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 
조업정지처분에 같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음.

대기환경환경보전법

# 설치(변경)허가 조건 신설 (2021. 10. 14.)

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주변환경의 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(제23조제9항)

# 방지시설 면제 자가측정 시행(2021. 1. 1.)

1.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측정  
※ 단, 물리적 또는 안정상의 이유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하다고  
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2. 자가측정은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기록 보존
3. 자가측정의 보고 : 자가측정 결과보고서,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  
상반기 측정결과 : 7월 31일까지, 하반기 측정결과 : 다음해 1월 31일까지



# 폐기물처리업, 다량배출자 등 강화

## 1. 폐기물 다량배출자 의무 : 폐기물 처리 위탁 시 위수탁기준 준수

※ 위탁 후에는 위탁폐기물 처리과정 주기적으로 확인

## 2. 폐기물처리업

- 5년마다 적합성 확인 의무(해당 업을 지속 수행 가능 여부 확인)
- 양도양수, 합병분할, 경매 등의 사유로 권리의무 승계 시 사전허가 의무
- 보관·매립 중인 폐기물 화재예방 영상정보처리시설 설치 (입법예고 中)

## 3. 올바로시스템

인계·인수 내용 미입력 또는 거짓 입력 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



# 6

## 환경관리 실무 요령

# 환경배출시설 인허가 (대기,수질,악취)

## 입주제한 협의

“배출시설 허가 제한지침”

반월지역은 제한지침 개정  
다량 오염 발생 업종 제한

## 허가(신고)서 접수

설치허가  
- 특정유해물질 발생  
설치신고  
변경허가  
변경신고

신고번호 제2018000-2018-0001호

### 악취배출시설 설치·운영신고 확인증

1. 상호 또는 명칭 : [redacted] (영년월일: )  
 2. 대표자 성명 : 대표이사 (영년월일: )  
 (법인등록번호: )  
 3. 사업장소재지 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[redacted] (전화: [redacted])  
 4. 업종 : [redacted] 제조업  
 5. 주 생산품 : [redacted]  
 6. 신고사항

악취배출시설				악취방지시설			
악취배출시설	주요배출공정	원료	규격	수량	악취방지시설명 (유해물질명)	규격	수량

\*악취방지법, 제8조제1항 제단, 제8조제2항 본문, 제8조의2제2항 제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수리합니다.

경기도 안산시장 2018년 08월 08일

## 허가(신고)서 검토 및 수리

환경책임보험 대상 확인  
- 인허가 전 가입  
첨부서류 여부  
오염물질 산정 적정 확인  
방지시설 설계 적정 확인

## 설치

배출시설  
방지시설  
적산전력계  
설치  
환경기술인  
임명

## 가동개시 신고(대기,폐수)

배출시설 설치 후 가동 전  
가동개시 신고 접수  
- 15일 이내 현장확인  
및 시료채취 검사  
(배출허용기준 준수 확인)

# 방지시설 설치 정상 가동(대기)

Step 1

배출시설 가동 시  
방지시설 “반드시” 가동 및 정상운영



후드  
↓  
덕트  
↓  
방지시설



# 배출허용기준 준수, 대기자가측정

Step 2

배출시설 오염물질 “자가측정” (대기)  
배출허용기준 항상 준수(수질 및 대기)

구 분	배출구별 규모 [먼지·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]	측정횟수	측정항목
1종	80톤 이상 배출	주1회	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
2종	20톤이상 80톤 미만인 배출	월2회	
3종	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	2개월, ★특정 월2회	
4종	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	반기, ★특정 월2회	
5종	2톤 미만인 배출구	반기, ★특정 월2회	

★ 대기방지시설 면제 시설 연 1회 이상 자가측정 실시

# 운영일지 작성 및 보관(대기)

Step 3

## 운영일지 작성 및 보관(대기)

(뒤 쪽)

[별지 제7호서식] <개정 2010.12.31>

(앞 쪽)

###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

담당	과장	부서 장	공장장	결 재

배출시설 가동시간 작성

일 날짜 : 온도:

#### 1. 배출구별 주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(조업)시간

배출구	배출시설	가동시간	비고
1	보일러	09:00 ~ 18:00	
2	제재시설	10:00 ~ 12:00	
3	외 중		

\* 비고란은 정상 여

방지시설, 전기사용량(전력지침) 작성

#### 2. 방지시설 운영사항

##### 가. 방지시설 운전사항

방지 시설명	설치 위치	전력 사용량 (kW/h)	처 리용량 (m <sup>3</sup> /min)	처리오염 물질	처리농도 (ppm 또는 mg/Sm <sup>3</sup> )	처리 효율 (%)	사용약품	
							약품 명	사용량
원심력	옥외	1234	100	먼지..				
여과			250	먼지..				

#### 나. 방지시설 보수사항

방지시설명	배출구별	보수기간	보수자	보수명세

시설 보수 및 방지시설 자가측정  
한 경우 반드시 작성

#### 3. 자가측

측정일:

①기상	②기온	③습도	④기압	⑤풍향	⑥풍속		
<input type="checkbox"/> 맑음, <input type="checkbox"/> 흐림, <input type="checkbox"/> 구름, <input type="checkbox"/> 눈, <input type="checkbox"/> 비	℃	%	mb	풍	m/sec		
⑦배출구	⑧주요배 출 설 명	⑨측 정 항 목	⑩측정 농도 (ppm, mg/Sm <sup>3</sup> )	⑪일일유량 (Sm <sup>3</sup> /일)	⑫일일배출 량 (kg/일)	⑬검사 기기명	⑭검사 방법
⑮연료명 및 사용량 (일)							
⑯원료명 및 사용량 (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원 포함)							
⑰환경기술인의 의견							
⑱기타							

# 운영일지 작성 및 보관(수질)

Step 3

## 운영일지 작성 및 보관(수질)

[별지 제20호서식]

【별지 제18호서식】 (앞 쪽)

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

결재: 환경기술인, 부서장, 공장장, 대표자

년 월 일 요일 날짜: 온도:

1. 폐수배출시설 가동(조업)시간대

시간대	1	2	3	4	5	6	7	8	9	10	11	12	13	14	15	16	17	18	19	20	21	22	23	24
구분																								

2. 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간대(처리방법: )

시간대	1	2	3	4	5	6	7	8	9	10	11	12	13	14	15	16	17	18	19	20	21	22	23	24
구분																								

시간대별 근무자 직·성명 ※ 시간대 표시는 검은색

3.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과 폐수배출량

구분	항목	전일 자침 (m)	금일 자침 (m)	사용량 (m <sup>3</sup> /일)	검침 시간대	구분	항목	전일 자침 (m)	금일 자침 (m)	배출량 및 사용량 (m <sup>3</sup> /일)
계						폐수배출량				
상수도	1호					폐수배출량				
	2호									
공업용수	1호					냉각수량				
	2호									
지하수	1호					소모 (증발량)				
	2호									
하천·호	1호					재사용량				
	2호									
해수	1호									

##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

연월일	결재		가동시간 (~)	원료사용량	용수 사용량 (L)	폐수 발생량 (L)	폐수위탁처리			보관 폐수량 (L)	기타 중요 사항
	대표자	환경기술인					위탁량 (L)	위탁·수탁 확인서 일련번호	처리업소명		
3/1					70	20				20	
3/2					110	40				60	
3/3					90	20				80	
					.					.	
					.					.	
					.					.	
4/1										3000	
4/2							3000		A	0	
						30				30	

297mm×210mm [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 (재활용품)]

# 환경기술인 선임, 법정 교육 이수

Step 4

## 환경기술인 선임 및 정기교육 이수

구분	환경기술인 자격기준(대기, 수질)
1종	대기-대기환경기사 이상, 수질-수질환경기사 이상
2종	대기-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, 수질-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
3종	대기-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, 환경기능사 또는 3년이상 환경분야 종사자
4종	피고용인 중 임명하는 자
5종	★ 공동방지시설, 특정오염물질 배출은 3종 사업장 기술인

- 최초교육 : 기술인력 등이 최초 업무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 (대기, 수질, 폐기물배출자)
- 보수교육 : 3년 마다 실시 (대기, 수질, 폐기물처리업)

#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

폐기물  
수집운반업

폐기물  
중간처분업

폐기물  
재활용업

폐기물  
최종처분업

폐기물  
종합처분

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수집운반, 폐기물 및 필요장비만 실을 수 있음.

폐기물 위수탁, 처리 위탁계약 체결, 3년 보관 (운반/처분/재활용 단가 기재)

폐기물 처리시설의 능력을 초과하여 위탁 받지 말아야 한다.

위탁 받은 폐기물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.

[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] 별표7 시설, 장비, 기술능력 유지

시행규칙 별표8 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”

# 폐기물배출자 준수사항



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변경신고 확인

폐기물 분리 배출(재활용율 증가), 처리업자 계약 처리 및 보관기한 준수

폐기물 보관 준수 - 종류별 성상별 구분, 바닥포장 지붕 벽면 갖추어 보관

폐기물 유출 금지,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 설치

폐기물 전자인계서(올바로시스템) 바로 입력

#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

**KF94 마스크** ·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

**KF80이상 마스크**

- 기침, 목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
- 건강취약계층<sup>1</sup>과 기저질환자<sup>2</sup>가 다른사람과 접촉하는 경우

**비말차단용·수술용 마스크**

-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·더운 여름철·호흡이 불편한 경우에 사용이 편리

- 1 건강취약계층 노인, 어린이, 임산부, 만성질환자 등
- 2 기저질환자 만성 폐질환, 당뇨, 만성 신질환, 만성 간질환, 만성 심혈관질환, 혈액암, 항암치료임환자,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

☞ 미세입자 차단

호흡 용이성 ☞

KF94

KF80

비말 차단용  
수술용

KF94

KF80

비말 차단용  
수술용



마스크 착용 전  
깨끗이 손 씻기



입과 코를 가리고,  
틀이 없도록 착용



착용중 마스크 만지지 않기  
만진 후 깨끗이 손씻기

# 마스크 이렇게 착용하면 안돼요!



입만 가리는 착용



턱에 걸치는 착용



겉을 만지는 행위



코만 가리는 착용

- 카페나 음식점에서 음식 섭취 전·후나 대화 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
- 잠시 마스크를 벗어야 하면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합니다



**마스크 선택법**

식약처가 허가한 **의약품**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

**마스크 폐기법**



마스크는 귀에 거는 끈만 이용해 벗은 후 **바깥면을 안쪽으로 접어** 끈으로 감고 **소독제를 뿌려** 중량제 봉투에 버립니다

※ 소독제가 없는 경우 비닐봉지에 넣어 쓰레기봉투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

Thank you for listening

